

“함께 하는 건설, 따뜻한 세상”



## 대한건설협회

수신자 외국인력 고용업체 대표이사

제목 2024년도 5회차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신청안내

---

1. 고용노동부 ‘2024년도 5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및 업무처리 요령 시달 (외국인력담당관-3844, 2024.11.18)와 관련입니다.

2. ‘2024년도 5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및 신청 안내문’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외국인력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 **고용허가서 신청서를 ‘24.12.2(월)~12.6(금)까지 공사현장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붙임 2 참조)

※ **내국인 구인노력**은 **현장별로** 사전에 **7일간\*** 하셔야 고용허가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붙임 4 참조)

※ 건설업에 배정된 쿼터 : 1,414명

※ 선택할 수 있는 국가 확대(6개국 → 10개국), 시행일 : ‘24.3.29, 붙임 1-4 참조

업종	기존 국가	추가 지정 국가
건설업 (10개국)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중국, 캄보디아, 태국	몽골,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3. 아울러, 귀사에서 현장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실 고용허가서 신청 첨부서류와 우리 협회에 제출하실 사증발급 업무대행 신청 첨부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원수급인과 협의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고용허가서 신청시 첨부서류 (현장관할 고용센터에 제출용)	1달 후(고용허가서 발급받은 후) 시증발급 업무대행 신청시 첨부서류 (대한건설협회에 제출용)
원수급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도급 계약서 사본 1부. (공동도급의 경우 지분율이 표기 되어야 함, 별도표기 없으면 공 동수급협정서 첨부)</li> <li>※ 필요사유 : 고용센터에서 현장별 고용가능인력 (원도급 계약금액 × 0.8 이내) 확인용</li> <li>○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li> <li>○ 외국인력현황표 사본 1부.</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좌 동</p> <p style="text-align: cent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li> <li>○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li> </ul>
하수급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도급 계약서 사본 1부.</li> <li>○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li> <li>○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li> <li>○ 건설업등록증 사본</li> <li>○ 개인정보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좌 동</p> <p style="text-align: cent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 1부</li> </ul>

※ 세부내용 : 붙임3-1 참조

- 붙 임 : 1-1. 2024년도 5회차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신청 및 행정사항 안내 1부.  
 1-2. 고용노동부 공문(2024년도 5회차 신규외국인력 배정계획 및 업무처리요령  
 시달) 1부.  
 1-3 붙임(2024년도 5회차 신규외국인력 배정계획 및 업무처리요령 시달)  
 2.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서식 1부.  
 2-1. 고용허가서 신청서식 중 사업장명 기재방법 안내 1부.  
 3-1. 업무대행(가상계좌발급) 신청서식 및 서류안내(신규) 1부.  
 3-2. 업무대행(가상계좌발급) 신청서식 및 서류안내(재입국 특례) 1부.  
 4. 구인신청노력 관련자료 1부.  
 4-1. 현장별 구인신청노력 샘플 1부.  
 5. EPS상 고용허가서 신청시 근로자 선택방법 변경 안내'(기존)센터알선 →  
 사업주알선) 1부.  
 6. 사용자교육 의무화 안내자료(기 안내한 사항과 동일) 1부.  
 7. 고용제한처분관련 주요위반사례 1부.  
 8-1. 고용노동부 공문(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H-2) 숙소 등 주거  
 환경 관련 업무협조 요청)1부.  
 8-2 붙임(외국인근로자 주거 관련 규정 안내) 1부. 끝.

# 대한건설협회장



수신자

부장 유승식 팀장 2024.11.19  
노유선

협조자

시행 외국인력고용지원팀-306 ( 2024.11.19. ) 접수

우 0605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7층(건설회관) / <http://www.cak.or.kr>

전화 /전송 02-518-9963 / [sik6199@cak.or.kr](mailto:sik6199@cak.or.kr) / 공개